

2025년도 제2회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계획 재공고

2025년도 제2회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인원)	임용직급	근무기간	담당업무
관광정책실	모노레일 안전관리책임자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2년 (주35H)	• 「궤도운송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 모노레일 차량 및 궤도 유지관리 및 정비 •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자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2년 (주35H)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8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정한 안전 관련 업무 •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상하수도 사업소	정수시설운영 (2명)	일반임기제 8급	2년 (주40H)	• 정수시설 및 통합관제시스템 운영관리 • 정수장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 근무 기간은 근무 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접수 인원이 임용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실시할 수 있음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88호)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거주지 : 제한 없음

○ 성 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임기제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직무 관련 분야에서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나.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모노레일 안전관리 책임자 (시간선택제 라급)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자격요건) 1.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또는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자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라급)	아래의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각각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 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요건)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산업안전 관련 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학과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분야 등에서 산업안전관리 분야 업무 를 담당할 경우 </div>
정수시설 운영 (일반임기제 8급)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자격요건)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이상

※ 관련 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 근무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상위 임용 직급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 직급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 ※ 근무실적, 사업의 연속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일반임기제: 주5일 주40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주5일 주35시간
 - ※ 주말근무·초과근무 할 수 있음
- 보수조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함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35시간) 기준 하한액	비고
	상한액	하한액		
8급(라급)	59,996	42,798	37,448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9급 및 마급의 경우 상한액의 60% 적용)
-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전문 지식, 성실도 등을 평가
 - 평가항목

- | | |
|--------------------|----------------|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평가기준

위 평가항목 기준(상, 중상, 중, 중하, 하) 평정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 |
|---|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
|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철원군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철원군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 시험일정(안)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0. 13(월) ~ 2025. 10. 17.(금)	2025. 10. 21.(화)	2025. 11월 중	2025. 11월 중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철원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공고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0. 13.(월) ~ 2025. 10. 17.(금)
 - 접수시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접수처 : 철원군 자치행정과(본청 2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우편 접수시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를 구입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 10. 17.(금) 소인분에 한해서 접수합니다. ※ 8·9급 : 5천원
- ❖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33-450-5232)

※ 우)240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

8. 제출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제출하시고, 제출된 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시행처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제출서류 중 '붙임1~붙임6'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스템플러 사용 및 제본철 등 불가(개별 낱장으로 제출)

-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응시수수료 : 철원군 수입증지(1층 민원허가과 판매) ※ 8·9급 : 5천원
-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과 자격은 경력증명서, 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재 금지
-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 제3,4호서식>
※ 성명, 나이,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내용 기재 금지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 ⑥ 채용분야별 자격증 사본
- ⑦ 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별지 제7호서식>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 응시자의 근무 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 여야 함.
-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반드시 명기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응시자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 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근무처(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관련자료는 ‘⑦경력(재직)증명서’ 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재직)증명사항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함.
-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또는 사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모두 제출
- ⑩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자격증, 상훈, 실적 등)**(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근 2년 이내 것만 인정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

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영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철원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절차 관련 문의: 철원군 자치행정과(☎033-450-5232)

채용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 고
모노레일 안전관리자	관광정책실	033-450-5246	
안전관리자	안전총괄과	033-450-5496	
정수시설운영	상하수도사업소	033-450-5522	